

②

○○호 제 - 호  
년 월 일

\_\_\_\_\_의 보호자 님

아이치현○○보건소장

취업 제한 등 통지서

귀하의 자녀분은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(이하 「법」 이라고 함) 제 6조에 규정하는 결핵에 감염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

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음과 동시에 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

1 병의 증상

- (1) 증상 \_\_\_\_\_  
기침, 가래, 발열, 가슴의 통증, 호흡 곤란, 그 외 (            ), 없음
- (2) 진단 방법 \_\_\_\_\_
- (3) 초진 년 월 일 \_\_\_\_\_
- (4) 진단 년 월 일 \_\_\_\_\_

2 제한 내용

- (1) 귀하의 자녀분은接客업 그 외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무는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2) 제한 기간은 그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그 증상이 소실할 때까지.

3 그 외

- (1) 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(2) 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법 제 77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(3) 법 제 18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 대해 그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것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- (4)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 이내에 아이치현 지사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(5)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상기 (4) 의 심사 청구 이외에 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아이치현을 피고로 한 (기소에 대해 아이치현을 대표한 사람은 아이치현 지사입니다.) 、 이 처분의 취소를 호소하는 기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(6) 상기 (4) 의 심사 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아이치현을 피고로 한 이 처분의 취소를 호소하는 기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답 당 : 건강 지원과